

우리 服飾에 中國服飾이 미친 影響

Chinese Influences on Traditional Korean Costume

서울女子大學

金 文 淑

Seoul Women's College

Moon-Sook Kim

<차 례>

- | | |
|-----------|---------|
| I. 序 論 | 2. 帶 |
| II. 衣服의 色 | IV. 衣 料 |
| III. 服 飾 | V. 結 論 |
| 1. 冠 服 | |

<Abstract>

If we are to define that the traditional costume is a comprehensive expression of the culture, thoughts, and arts of a country,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traditional costume would have always reflected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times. In other words, the cultural contemplation of a certain people at some point in the history is only possible when we observe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costume worn by the people of respective times.

Although the Korean people had the native costume of its own from the times of the Ancient Choson to the Three Kingdoms of Koguryo, Paekche, and Silla, the Chinese influence on Korean traditional costume became somewhat pronounced ever since the Silla strengthened the political ties with the T'ang dynasty in China, and it came to a climax when the dual structure in Korean native costume, being compounded with the Chinese touch, continued to be prevailed from the era of the Unified Silla to the Koryo and throughout the succeeding Yi dynasty, thereby copying the typical aspects of Chinese pattern in clothing and dresses worn by the ruling classes, namely the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Kings.

Therefore, it is our aim to study the pattern of Chinese influence on our traditional costume, as well a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by way of contrasting and comparing our official outfit system, which had been developing in dualism since the era of the Unified Silla, with that of China, and to trace in part the Korean traditional costume.

In comparing our traditional official outfit system with that of China, we have basically concentrated on the comparison of the official outfit systems during the periods of the Three Kingdoms, the Koryo, and The Yi dynasty with that of corresponding era of Chinese history, namely the dynasties of T'ang, Sung, and Ming, and followed the documentary records for the comparison.

Koreans had fallen into the practice of worshipping the powerful in China and begun to adopt

the culture and institutions of the T'ang dynasty since the founding of the Unified Silla. From this time forth, Korean people started to wear the clothes in Chinese style. The style of clothing during the period of the Koryo Kingdom was deeply influenced by that of the T'ang and Sung dynasties in China, and it was also under the influence of the Yuan dynasty (dynasty established by the Mongols) at one time, because of the Koryo's subordinative position to the Yuan.

At the close of the Koryo dynasty, the King Kongmin ordered the stoppage on the use of "Ji-Joung", the name of an era for the Yuan dynasty, in May of the eighteenth year of his rule in order to have the royal authority recognized by a newly rising power dominating the Chinese continent, the Ming. King Kongmin presented a memorial, repaying a kindness to the Emperor T'aejo of the Ming dynasty in celebration of his enthronement and requested that the emperor choose an official outfit, thereby the Chinese influence being converted to that of the Ming.

As a matter of course, the Chinese influence deepened all the more during the era of the Yi dynasty coupled with the forces of the toadyic ideology of worshipping the China, dominant current of the times, and the entire costume, from the imperial crown and robe to the official outfit system of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official uniforms, ordinary clothes, sacrificial robes, and court dresses followed the Chinese style in their design.

Koreans did not have the opportunity of developing the official outfit system on its own and they just wore the official outfit designated on separate occasions by the emperors of China, whenever the changes in dynasty occurred in the continent. Especially, the Chinese influence had greatly affected in leading our consciousness on the traditional costume to the consciousness of the class and authority.

Judging from the results, Koreans had been attaching weight to the formulation of the traditional outfit system for the ruling classes in all respective times of the history and the formulation of the system was nothing more than the simple following of the Chinese system.

I. 序 論

服飾이란 한 나라의 文化 思想 藝術 등의 포괄적 表現이라고 한다면 이에 는 반드시 그 時代의 社會 相 文化相이 反映되게 마련인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어느 時代 어느 民族의 文化的 考察은 그 民族 그 時代에 着用되었던 服飾의 特徵을 살펴 봄으로서 비로서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上古時代 以來로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時代에 이르기 까지 우리 民族 固有의 服飾이 있었지만 新羅와 唐과 政治의 尤대를 強化한 後 統一新羅를 거쳐 高麗時代 그리고 朝鮮 王朝에 들어 오면서는 우리 固有의 服飾과 中國服飾과의 二重構造를 갖게 되었으니 王을 비롯한 百官等 支配階級の 服飾은 中國服飾의 典型的인 面

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러므로 統一新羅 以後 二重構造 속에서 發達해온 우리의 服飾 中 冠服制度和 中國冠服制度를 比較 對照 함으로서 中國이 우리의 服飾나아 가서는 文化 社會相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또 우리나라 服飾의 源流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作業의 一部分을 研究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研究에서는 服飾에 미친 影響만을 中心하기로 하고 服飾에 미친 影響을 土台로한 文化 社會相의 研究는 後日의 課題로 삼고져 한다. 또한 無意識에 있었던 東洋의 倫理와 思想이 담겨진 옛옷의 服飾美를 찾아 봄으로서 復古的 感覺美를 찾아 보겠다는 요지음의 경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을 期待하는 것도 本研究의 또 다른 目的이 있다. 우리나라와 中國의 冠服을 比較함에 있어서 時代的으로 우리나라의 三國時代 高麗時代 朝鮮 王朝를 基準으로 하여 同時代인 中國의 唐宋明

의 것을 中心으로 하였으며 주로 文獻記錄에 依存하였다.

II. 衣服의 色

우리나라 三國時代에 있어서 公服의 襲用은 三國史記에 依하면 新羅 法興王 七年正月에 처음으로 百官의 公服을 朱紫의 차례로 定한데 있다. 이는 “紫 緋 靑 黃의 四色公服制度”¹⁾이고 伊湊 金春秋가 唐에 講兵하러 가서 衣冠의 制度를 唐制度에 따르고자 하여 眞德王 三年正月 부터 着用하기 始作하였으니 太大角干에서 大阿湊까지는 紫衣 阿湊에서 級伐湊까지는 緋衣 大奈麻 및 奈麻는 靑衣 그리고 大舍에서 造位까지는 黃衣를 입도록 規定하고 있다²⁾.

百濟에서는 古介王때 法度가 完備되어 同王 27 年에는 百官의 服色을 定 하였으니 佐平부터 奔率까지는 紫色을 將德에서 對德까지는 緋色을 文德에서 克夷까지는 靑色으로 하고 있다³⁾. 北史 東夷條에 依하면 高句麗의 服色은 百濟의 그것과 거의 同一 한 것으로 記錄되어있어⁴⁾ 百濟의 服色을 準하면 될것이다. 그러나 高句麗壁畫에 보이는 袍, 襦, 裳에 있는 襪의 色은 土黃, 黑, 白, 豆綠紫, 朱紅, 暗靑 色인데 이것은 오히려 中國에서도 그 影響을 받았을것으로 思料된다. 高句麗에서는 光宗 11年 3월에 紫衫 丹衫 緋衫 絕衫의 公服을 制定하였고⁵⁾ 毅宗朝의 公服制度 역시 四色인데 紫 緋 綠 그리고 皂色이 있다. 이 때의 四色公服制度를

高麗史 輿服志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元尹以上 紫衫
中壇鄉以上 丹衫
都航鄉以上 緋衫
小主簿以上 絲衫⁶⁾

이와같이 三國時代 高麗時代에는 服色으로 尊卑와 上下의 階級을 가리게 되었다. 그런데 恭愍王 六年 閏九月에 司天少監 于必興은 그의 王龍記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服色은 五行에 맞도록 改革할것을 上書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白頭山에서 始作하여 智異山에서 끝나는데 그 地勢는 水를 뿌리로 하고 木을 즐기로 하며 땅을 黑으로서 父母를 삼고 靑으로서 몸을 삼았다. 만약 風俗이 土에 順하면 번창하고 逆하면 災殃을 받을 것이다. 風俗이란 君臣 百姓의 衣服冠蓋을 말 함이니 今後로는 文武百官은 黑衣에 靑笠을하고 僧服은 黑巾大冠으로 하고 女服은 黑羅로 하여 風土에 順應 하자고 上書하니⁶⁾ 恭愍王이 이를 聽從하였다라고 한다. 이와같은 例로 보아도 우리의 色觀念은 周易의 五行思想의 五色인 赤色 白色 靑色 黃色 黑色의 다섯 가지 色에 根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五行思想에서의 色의 表現은 「東方은 靑이요 西方은 白色이요 南方은 赤色이요 北方은 黑色이요 中央은 黃色이요 또한 靑은 木이요 白은 金이요 赤은 火이요 黑은 水이요 黃은 土인것이다」⁷⁾ 이와같이 服色을 五行說에 의거하여 改革할것을 稟啓하였고 高麗時代의 服飾은 新羅의 舊制와 唐宋元明의 二重構造 속에서 特히 元나라

1) 三國史記卷第三十三 雜誌 第二色服 新羅條 參照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階名	伊湊	伊湊	迎湊	波珍湊	大阿湊	阿湊	一吉	沙湊	級伐	大奈	奈麻	大舍	舍知	吉士	大鳥	小鳥	造位
公服	紫衣(眞骨以上級)				緋衣(六頭品級)			靑衣(五頭品級)			黃衣(四頭品級)						

2) 增補文獻備考 七十九卷 章服一 「法興王十年 更之服色 自太大角干至大阿湊紫衣 阿湊至級伐湊緋衣 大奈麻奈靑衣 大舍至造位黃衣」

3) 三國史記 百濟本紀 「百濟古奈王 二十七年 下令 六品以上服紫 十一品以上服緋 十六品以上服靑」

4) 北史 卷四十七 東夷條 「百濟衣服 與 高麗略同」

5) 高麗史志 第二十六 輿服志 「光宗十一年 百官公服 元尹 以上紫衫 中壇鄉以上丹衫 都航鄉以上緋衣 小主簿以上綠衫」

6) 高麗史志 卷七十二 冠服通制 「(前略) 恭愍王 六年閏九月 司天少監于必興上書 玉龍記云 我國始干白頭 終干智異 其勢根水幹之地 以黑爲父母 以靑爲身 若風俗順土則昌 逆土則災 風俗者 君臣百姓 衣服冠蓋是也 今後 文武百官 黑衣靑笠 僧服黑巾大冠 女服黑羅 以順土風從之」

7) 書經 第四篇 周書 第六章 洪範條 p.186, 1971, 明文堂

服屬期에서 벗어나 明나라 服屬期로 轉換하게 되었다. 勿論 唐나라에서도 唐書車服志에 보면 三品 이상은 紫色을 五品 이상은 緋色을 七品 이상은 綠色을⁸⁾ 着用 하도록 되어 있었고 王의 袍도 「天子之服의 通天冠絳紗袍⁹⁾로 公式 禮服은 絳紗袍 이었으나 常服은 黃色 이었다. 黃色은 五色中 中央之色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君王之色으로 간주 한 때는 一般庶民들의 着用을 禁止 시켰던 적도 있다¹⁰⁾.

더욱이 中國 古代 皇帝가 옷을 만들때 「上衣를 乾으로 下衣를 坤으로 하였으니」¹¹⁾하는 記錄은 天은 玄(黑)이요 地는 黃인 까닭으로 上衣는 黑으로 그리고 下衣는 黃色으로 하였음의 由來라고 볼수 있다. 宋나라 역시 宋史輿服志에 보면 唐의 制度를 따라 官吏의 公服은 三品 이상은 紫色 五品 이상은 朱色 七品 이상은 綠色 九品 이상은 碧色 이라고 하였으니¹²⁾ 후에 와서는 紫 緋 色으로 되었다¹³⁾

그러면 朝鮮王朝時代의 服色에 關한 記錄을 보아야 할것이다. 經國大典에 公服으로는 “正三品 이상의 高級官吏는 紅袍를 從三品以下 六品까지는 靑袍를 七品以下는 綠袍를 입도록 規定 하고” 있으며¹⁴⁾ 王의 龍袍는 「絳紗袍」¹⁵⁾를 그리고 王世子의 公服도 絳紗袍¹⁶⁾를 王妃의 翟衣는 大紅緞을 입었다. 說文解字註에 따르면 분홍색 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太祖實錄에 보면 五色은 勿論이고 間色인 紫色等을 좋아하고 特히 分홍색과 자주색이 人君의 服의 色같이 되었다¹⁷⁾. 그래서 官吏들도 品階가 높지 못하면 分홍색 자주색 관복을 着用 할수가 없었다. 以上의 時代의 服色을 綜合하여 볼때 (表 II-1을 參照) 紫色 緋色은 新羅時代부터 朝

鮮王朝時代까지 文武百官의 色으로 거의 同一하게 使用되어 왔다. 勿論 新羅의 服飾은 唐나라의 制度를 모방 하였으니 우리의 服色 또한 中國의 影響이 至大하였으며 階級的 권위적 服色 意識이 크게 作用하였던 것으로 말할수 있다. 新羅 眞德王三年에 唐의 冠服 一襲을 받았고 高麗 光宗때 百官公服의 色을 定하였으나 이 또한 新羅의 制度를 踏襲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表 II-1) 公服色

區分	紫色	緋色	綠色	靑色	紅色
唐	三品以上	五品以上	七品以上	—	—
宋	三品以上	—	七品以上	—	—
百濟	佐平부터 奈率까지	德將부터 對德까지	—	文德부터 克虞까지	—
新羅	眞骨以上	六頭品以上	—	五頭品以上	—
高麗	元尹以上	都航郷以上	小主簿以上	—	—
朝鮮王朝	—	—	七品 八品 七品 九品	從三品 四品 五品 六品	二品 正三品

高麗末에도 明나라로 부터 制度를 輸入하였지만 明 역시 唐制度를 계승 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는 곧 明史記錄에도 있으니 洪武 三年 禮部에서 올린 글에 朱色은 周 唐 漢宋의 服色으로 崇尚한 것으로 의당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¹⁸⁾. 한가지 特記할 것은 事大主義思想 때문에 中國 天子服의 服色인 黃色을 입지 못하고 있다가 朝鮮王朝 末期에 와서 高宗이 皇帝 稱

8) 唐書 二十四卷 志十四 車服志 p.8

9) 唐書 二十四卷 志十四 車服志 p.4

10) 柳喜卿著 「한국 복식사연구」 p.585, 1975 梨花出版社

11) 後漢書 卷三十 輿服志 中華民國 60年 藝文印書館 「上衣玄 下衣黃 皇帝以下如制衣裳 九家易 乾爲衣 坤爲裳一」

12) 宋史 卷 一五二 輿服志 p.13 「文三品以上紫褶 五品以上 緋褶 七品以上綠褶 九品以上碧褶」

13) 宋史 卷 一五三 p.2

14) 經國大典 儀章條服項

15) 註 14) 參照

16) 弘文館篇輯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條 禮考二六 章服一 p.7

17) 太祖實錄 卷八四年 乙亥 p.10 「甲子上服 絳紗袍 云云」

18) 明史 卷 六十七 志 四十三 輿服三 p.1 「洪武 三年 禮部 言歷代異尙夏 黑商白周亦秦黑漢赤 唐服飾黃析織赤 今國家承元之後 取法 周漢唐宋服色所 尙於赤爲宣從之」

號를 使用하면서 부터 王의 常服인 龍袍를 黃色으로 하였으며 王妃服도 正裝時에는 속에 松花色(黃色) 저고리(赤古里)를 입었다는 事實이다¹⁹⁾.

우리나라의 服色은 三國時代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變化되거나 發展을 보지는 못 하였고 문헌상으로 보면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 그리고 高麗時代가 服色의 配合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었고 朝鮮王朝에 들어 오면서 高麗 翡色의 전승과 담백한 색이 正着하는 한편 色調가 오히려 單調하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身分의 上下 尊卑 貴賤의 等級을 가르기 위해 服色에도 엄격한 區分을 設定하게 되었다 함은 이미 위에서 言及한바라도 充分할 것이다. 또 階級을 區分 하기 위한 服色에 對하여도 上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中國에서의 特定色 崇尚 때문에 우리의 服色에서도 一部色을 禁止하고 있었으니 이에 對한 例를 들어 가면서 服色禁制를 通한 우리의 影響을 보아야 할 것이다. 黃色은 中國에서 「中之色君之色」이라 하여 土庶人에게 禁止 시켰고 특히 唐高祖에 이르러 緒黃袍를 天子의 袍衫으로 하여 黃色은 天子以外는 아무도 使用하지 못 하게 되었다²⁰⁾. 따라서 우리나라도 眞德王以後 唐儀를 좇게 됨에 따라 法興王 當時 制定되었던 大舍에서 先沮까지의 下品の 服色으로 着用되었던 黃色은 자취를 감추었다. 勿論 興德王九年的 服飾禁制에 眞骨女條에 「凡色禁緒黃」 나머지 頭品女나 平人女에 있어서도 「色禁緒黃」으로 미루어 보아 王은 黃色을 着用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¹⁾. 그리고 高麗史輿服志에서는 高麗 太祖는 開國初 일도 많고 또 初創期이기 때문에 新羅의 舊制를 그대로 使用하도록 하였고 視朝之服으로는 柘黃袍를 着用 하였다는 記錄이 있기도 하

며²²⁾ 또한 高麗圖經에 王의 常服으로는 窄袖緇袍가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 太祖는 黃色的 禁色을²³⁾ 中國의 皇帝色 때문 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太宗때에 들어 와서는 對照的으로 中國 明에 對한 請賜冠服에 나타난바 咨文과 더불어 慕華 觀念 事大思想에 젖은 나머지 黃色을 中國 皇帝服色으로 絶對 神聖視하여 王은 勿論 一般人에게 禁하였다²⁴⁾. 또한 太宗六年閏七月²⁵⁾ 世宗 三十一年正月²⁶⁾ 中宗 七年 二月條²⁷⁾에 보면 紫色과 紅色에 對한 禁制가 자주 나오는바 이는 黃色이 中國天子의 色으로 因하여 王自身도 이 色을 피하여 紫色을 王色으로 삼았고 이에 比擬된것이 絳色 즉 大紅色 이기 때문이다.

Ⅲ. 服 飾

1. 冠服

(1) 三國時代

高句麗의 衣服에 關係서는 新唐書 東夷傳에 좀더 構體的인 記錄이 있으니 「王服은 五采服이며 王冠은 金釵白羅冠이었다. 여기에 역시 金釵를 裝飾한 革帶를 띠었으며 大臣級은 靑羅鳥羽冠 一般官人은 絳羅鳥羽冠에 모두 金銀으로 장식을 한 것을 썼고 衣服은 筒襖衫에 大口袴를 입었으며 여기에 白韋帶를 띠었고 黃革履를 신었다. 그리고 庶人은 褐衣를 입고 弁을 썼으며 女子는 머리에 巾幘을 하였다²⁸⁾. 그리고 冠帽에 있어 李如星이 그의 「朝鮮服飾考」에서 古記錄을 土台로 만든 (表 Ⅲ-2를 參考삼아 여기에 圖解하였다²⁹⁾. 百濟는 古介王 二十七年에 品冠服色을 定하였다고 하는바³⁰⁾

19) 金東旭著 「한국 복식사 연구 朝鮮 中後期の 女服 構造一」 p.331 亞細亞 文化史, 1973

20) 唐書 卷第二十四志 第十四 車服參照

21) 三國史記 卷 三十三 雜誌 二色服條參照

22) 高麗史志 卷 二十六 輿服參照

23) 太祖實錄 卷九 五年六月條 參照

24) 柳喜卿著 「한국 복식사연구」 p.586, 1975 梨花出版社

25) 太祖實錄 卷十二 六年 閏七月條 參照

26) 世宗實錄 卷 百二十三 三十一年 正月條 參照

27) 世宗實錄 卷 十五 七年 二月條 參照

28) 柳喜卿著 「한국복식사연구」 p.53, 1975 梨花出版社

29) 李如星著 「朝鮮服飾考」 第一章 諸論參照

30) 註 3)을 參照

(表 Ⅱ-1) 階級에 따른 高句麗冠帽

階級	王	貴人大官人	官人
史書			
魏書	—	無後幘	折風巾
北史	—	鳥羽折風弁 紫羅蘇骨	左同 —
隋書	—	鳥羽冠 紫羅冠	左同 —
唐書	白羅冠	青羅鳥羽冠	絳羅鳥羽冠

冠帽에 있어서는一品 佐平에서 六品 奈率까지 銀花를 裝飾하고 七品 將德에서 十六品 克處까지는 銀花飾은 없으나 冠制는 同一 하였고 衣色에 있어서는 官人和 平人을 區別 하기 위하여 모두 緋色衣를 着用토록 하였다³¹⁾. 그러나 百濟 服飾에 關해서 魏書等에 依하던 「其衣服飲食與高句麗同」 이라 하여 高句麗와 거의 같다고 있다³²⁾. 百濟는 族制組織의 社會에서 發生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北方中國의 影響을 깊게 받아 온 流移民과 土着民으로서 混成된 辰韓이란 社會에 高句

麗 方面의 一支派가 침투되어 세워진 나라인 點을 감안해 볼때 文化的 地盤의 整理에 있어서는 高句麗 보다 더 많은 中國의 影響을 받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니 服飾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닐것으로 思料된다.

新羅는 第二十三代 法興王 (AD514~550) 七年 正月에 처음으로 百官의 公服을 定한 以來³³⁾ 第二十八代 眞德王 (647~654) 二年 金春秋가 唐나라에 들어가 玄宗皇帝로 부터 衣帶를 받아 오는것을 계기로 男子의 衣冠制度를 唐制로 하였으니 衣服에 있어서는 紫衣 緋衣 青衣 黃衣를 着用하기 始作 하였다³⁴⁾. 그후 第三十代 文武王 (661~681) 四年에는 婦女子의 衣服制度 마저 定하여 衣冠制度가 中國과 비슷하게 되었다³⁵⁾. 이때 新羅는 三國統一을 達成하여 太平세월을 누리면서 文化는 爛熟期에 들어 섰으며 服飾制度도 문란하여 지매 第四十二代 興德王 (826~836) 九月에는 「사람에게 上下가 있고 地位에는 尊卑가 있으며 이름도 같지 않은데 다만 異方의 것을 진기하다 하여 崇尚하고 오히려 土產物을 속되고 賤하다 하여 싫어하며 분수를 지나쳐 禮儀에 거슬리고 風俗이 쇠락하여 가

(表 Ⅱ-3) 新羅(興德王) 服飾禁制 (834年)

階級	服飾	冠帽	表衣	袴	短衣	內裳	表裳
眞骨大等	幘頭	任意	禁 刷繡錦羅	同表衣	—	—	—
眞骨女	冠	禁瑟瑟細	同冠帽	禁 刷繡羅	—	—	—
六頭品	幘頭	用總羅絹布	用 綿紬細布	用 純絹綿細布	—	—	—
六頭品女	冠	用總羅紗縠	用 小綾綾純絹	禁總繡綿羅 刷羅金泥	同 背襠	禁刷繡綿羅 野草羅	禁刷繡錦羅總羅 野草羅金銀泥縠縠
五頭品	幘頭	用羅純絹布	用 布	用 綿紬布	—	—	—
五頭品女	無冠	—	用 無文獨織	禁刷繡羅總羅 草羅金泥	同 背襠	禁刷繡錦野草羅 金銀泥縠縠	禁刷繡錦野草羅 總羅金銀泥縠縠
四頭品	幘頭	用施絹布	用 綿紬	用 布	—	—	用 純絹
四頭品女	無冠	—	用 綿紬	用 小文綾純絹	用 絹	無 內裳	同 袴
平人	幘頭	用絹布	用 布	用 表衣	—	—	—
平人女	—	—	用 綿紬布	用 純	—	—	用 絹

31) 柳喜卿著 「한국복식사연구」 p.69, 1975 梨花出版社

32) 註 4) 參照

33) 註 1) 參照

34) 註 2) 參照

35) 石宙善著 「韓國服飾史」 p.23, 1971 寶晉齋

고 있다. 감히 舊章에 쫓아서 밝힐 것을 命하노니 만약 故意로 이를 犯하면 常刑이 있을 것이다.³⁶⁾라고 하면서 服飾禁令을 내리니까 있으니 그 表를 要約하면 表 Ⅱ-3에서와 같다.

우리나라 三韓時代에는 「갈」을 머리에 썼다 한다. 그후 高句麗때 비로서 冠帽가 쓰이게 되었으니 그 이름을 折風 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折風의 形은 “弁”이라는 낱말 비슷한 것으로 三角形으로 접어 머리에 알맞게 한것이라고 본다. 이런 弁帽形의 冠帽가 階級을 表象하기 위하여 白羅冠 靑羅冠 緋羅冠 등으로 區別도 하게 되었고 또 王은 特殊한 金銅飾冠을 着用 함으로서 威嚴과 神聖觀念을 나타내는 등 우리나라의 獨特한 冠帽를 完成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統一新羅時代에 와서는 唐나라의 冠帽制度를 輸入 함으로서 우리의 것은 發展을 보지 못하고 中國의 冠帽를 眞骨大等 부터 平人 까지 上下 모두 着用하게 되었다(表 Ⅱ-3 參照).

(2) 高麗

高麗時代의 服飾은 初期에는 新羅의 舊制를 따랐으며 光宗 十一年(960年)에 百官의 公服을 定하였고 毅宗(1146~1170) 朝에 崔允儀가 唐制를 가려서 百官의 冠服制度를 갖추어 놓았다고 한다. 「高麗圖經」³⁷⁾(表 Ⅱ-4 參照)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中國에 해마다 使臣을 보내 數次에 걸쳐 襲衣를 받음으로서 華風에 젖어 하나같이 宋의 制度를 좃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高麗末 恭愍王(1351~1374)은 明나라에 衣服制度를 請 하였던바 이에 對해 明太祖는 同王 十九年에 王은 勿論 臣下에 이르기까지의 祭服과 官服을 賜與하였으니 그 內容을 보면 우리나라를 明나라의 屬國으로 取扱하여 明의 官等에서 二等遞降原則을 적용 함으로서 우리나라 一品의 관복은 明의 三品과 同一 하였던 것이다.³⁸⁾ 그후 禔王(1374~1388) 때 明나라에 使臣으로 갔던 使長壽는 明나라에서 拜

(表 Ⅱ-4) 王服—庶官服圖表(高麗圖經)

着裝者	冠帽	衣	笏
王服	常服	鳥紗高帽 (鳥紗折上巾)	窄袖緋袍 —
	(朝服)	幘頭	(窄袖細袍) —
	祭服	冕(旒冠)	(九章服) 圭
	公服	—	紫羅公服 象笏
	燕服	皂巾	白紵袍 —
令	官服	紗製幘頭	紫文羅袍 —
國	相服	(紗製幘頭)	紫文羅袍 —
近	侍服	(幘頭)	紫文羅袍 —
從	官服	(幘頭)	紫文羅袍 —
卿	監服	(幘頭)	紫文羅袍 (緋文羅袍) —
朝	官服	(幘頭)	緋文羅袍 —
庶	官服	幘頭	緣衣 —

은 紗帽와 團領을 입고 왔으며 同時에 鄭夢周 등이 元나라 服制를 改革 一品에서 九品까지 紗帽와 團領을 着用토록 할것을 提議한 點³⁹⁾ 그리고 王이 便坐祝事때는 鳥紗帽와 窄袍에 犀金玉環帶를 佩었다고⁴⁰⁾ 한 徐兢의 말을 綜合해 볼때 高麗中期때 부터 紗帽가 傳來되었을 것으로 또 一般官吏들이 쓰게 된것은 高麗末期부터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던 恭愍王 十九年 明에의 「請賜冕服」과 洪武 二十六年에 制定된 明의 親王服과 比較해 봄으로서 그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表 Ⅱ-5 參照).

(3) 朝鮮王朝

李太祖가 朝鮮을 창건 등극하자 都評議使司에서는 다음해(太祖 二年) 元旦부터 冠服을 입도록 할것을 上啓하자 太祖는 禮部로 하여금 그 制度를 상정시켰으니 이것은 高麗 禔王 때 “始革胡服依大明”라 하여 明制에 따라 構體의으로 改正한 冠服을 大體로 그대로 襲用했던 것이라고 하겠다.⁴¹⁾ 그

36) 三國史記 卷 三十三 雜誌 第二色服 新羅條

37) 徐兢著「宣和奉使高麗圖經」卷 七冠服參照

38) 高麗史 志 二十六 p.5~6

39) 弘文館纂輯「增補文獻備考」卷 七十九 禮考 二十六 章服一 p.29. 「鄭夢周 請革胡服襲華制 自一品至九品 皆服紗帽團領」

40) 徐兢著「高麗圖經」卷 七冠服 p.16

41) 高麗史志 卷 二十六 輿服 및 太祖實錄 卷 二 元年 十二月條 參照

(表 Ⅱ-5) 高麗請賜冠服과 明親王服과의 對比

(恭愍 王朝)	(洪武 二十六年 制)
圭九寸	圭 九寸二分五釐
冕 青珠九旒	冕五采王珠九旒紅組纓青纒 充耳金替導
青衣畫龍山轡火宗彝 五章在衣	青衣五章織山龍華蟲火宗彝
總裳繡藻粉米黼黻四章 在裳	總裳四章織藻粉米黼黻
白紗中單黼領青綠袖襪	白紗中單黻領青綠
蔽膝總色繡火山二章	蔽膝隨裳色織火山二章
革帶 金鈎鑲	革帶 金鈎鑲
玉佩	佩玉
綬赤白纁緣四采綬小綬 二間施金環	綬五采赤白元纁緣織成純赤 質三百二十首小受三色同 大纁間織三玉環
大帶表裏白羅紅緣	大帶表裏白羅朱綠緣
白襪	白襪
赤履	朱履
(高麗史志卷二十六輿地) (大明會典卷之六十禮部十 八着服一親王冠服)	

후 朝鮮王朝太宗 二年三月 明나라 使臣 潘文奎가 갖고온 勅書에 「屢次 使臣을 보내 冠服制度를 請함으로 古制를 稽考하여 王에게 親王九章服을 보낸다고 하면서 비록 四夷나라가 크더라도 子男之禮로 대우 할것이지만 特別히 親王服으로 한다고」⁴²⁾ 하였으니 이 얼마나 屈辱의인 語句인가 알 수 있다. 또한 王世子の 朝服과 六梁冠이 明나라에서 왔다⁴³⁾. 다시 말하면 朝鮮王朝時代의 官服과 冠帽 帶 모두 明의 影響을 받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大明會典에서 보면 明制度는 唐의 制度를 쫓아 朝服 祭服 公服 常服등의 四制를 두었는데 公服은 宋의 公服과 같았고 常服은 洪武三年에 文武官常朝視事服으로 烏紗帽 團領 束帶를 定했고 洪武 二十三年에는 사람의 몸의 크기에 맞추어 制

(表 Ⅱ-6) 經國大典에서 본 冠服構造

品階	服飾	冠	服
一品	紗帽, 貫子, 笠纓用金玉笠飾用銀大君, 用金 耳掩用段貂皮	紗, 羅, 綾段 大君麒麟王子君胸背白澤, 文官, 孔雀武官虎豹	
二品	紗帽, 貫子, 笠飾用金玉, 笠飾用銀, 耳掩用, 段貂皮	紗, 羅, 綾, 段胸背(文官 雲鷹, 武官虎豹, 大司憲豹解)	
三品	紗帽, 堂上官貫子, 笠纓用金玉笠飾用銀耳掩, 堂上官用, 段貂皮, 其餘三品以下至九品用綃扁虱	堂上官 紗羅 綾段胸背 文官 白鵬 武官 熊羆	
四品	紗 帽	常服無 公服 青袍	
五六品	紗 帽	常服無 公服 青袍	
七八九品	紗 帽	常服無 公服 綠袍	
錄事	有角平頂巾	團領	
諸學生徒	緇布巾在學	團領 儒學青衫	
書 吏	無角平頂巾	團領	
鄉 吏	黑竹方笠	直領	
別 監	朱黃草笠	直領	
關內各差備	青 帽	直領	
引 路	紫 巾	青團領	
羅 將	皂 巾	皂團領 土黃團領	
皂 隸	皂 巾	青團領公翁主陪用草錄	

度를 定하였음을 볼 수 있다⁴⁴⁾. 그리고 世宗代에는 明의 禮制에 充實한 百官의 朝服 祭服 公服 常服의 制가 完成되었고 儀禮詳定所 設置等으로 經濟續大典을 마련하기 始作 世祖代를 거쳐 睿宗代에 「經國大典」을 完成시켰으니 이 經國大典에 나타난 冠服構造는 表 Ⅱ-6과 같다.

2. 帶

衣服制度를 정립시켜 주는 標本인 同時에 裝飾品 이기도 한 帶가 우리나라 表衣에 많이 使用된 것 같다. 더우기 하나의 장신구로서의 帶라기 보

42) 太祖實錄 卷三 太宗 二年 三月 p.11

43) 世宗實錄 卷四十二 世宗 十月 p.18 「上曰 令賜世子六梁冠 云云」

44) 韓國服飾學會誌 第三號 p.58 「中國의 團領에 대한 研究 一金美子」

다는 오히려 品階區分을 위한 服飾手段의 一部分으로 重要な 役割을 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帶는 우리나라 上代 여러나라 服飾에 거의 共通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新羅가 많이 發達 되었다. 이 帶에 對하여 高句麗關係 古記錄에 찾아보면 銀帶(翰苑蕃夷部) 金釧革帶(唐書東夷傳) 白韋帶·白皮小帶(舊唐書東夷傳) 紫羅帶(舊唐書志音樂) 素皮帶(北史列傳) 등이 나온다. 이 古記錄에 나오는 銀帶나 金釧革帶의 表現이 證明해줄 것으로 思料 되는 革帶類들은 鈔帶類 였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⁴⁶⁾. 唐의 冠服一襲을 받아 온⁴⁶⁾ 新羅 또한 眞德王以後 興德王 當時 制定되었던 服飾禁制에 依하면 六頭品은 그 帶에 鳥犀 鍮 鐵銅 단을 五頭品은 鐵 銀단을 四頭品은 鐵 銅단을 使用케 한 것이 보인다⁴⁷⁾.

衣冠奏請外交次 倭長壽가 辛禰 十三年五月에 使臣으로 明나라에 건너가 明나라 群臣의 服飾制度를 輸入하였음은 勿論 同年 六月에 鄭夢周 李崇仁 河崙 姜淮白 等の 胡服改革 提議를 통해 冠服制度를 制定한 高麗는 一品에서 九品까지 모두 紗帽 團領을 着用하고 그 品帶에 差를 두었으니 一品 重大匡 以上은 鈔花金帶, 二品 兩府 以上은 素金帶, 開城府尹 및 三品 大司憲 부터 常侍 까지 鈔花銀帶, 判事 부터 四品까지 素銀帶, 五六品에서 七品 門下錄事 注書 密直堂後 三司都事 藝文春秋館, 典校寺, 成均館, 八九品 外方縣令 監務는 角帶를 하고 東西班 七品 以下는 氈帽에 絲帶를 하고 諸都監 各邑 근무자는 紗帽品帶 參外는 紗帽角帶를 하였⁴⁸⁾. 이에 明나라 洪武 三年에 制定

된 文武官 常服과 比較해 보면 明나라에서는 一品은 玉帶, 二品은 花犀帶, 三品은 金鈔花帶, 四品은 素金帶, 五品은 銀鈔花帶, 六品 내지 七品은 素銀帶, 八品 내지 九品은 鳥角帶로 되어 있다⁴⁹⁾. 經國大典 禮典 儀章條에 依하면 一品은 犀帶, 正二品은 鈔金帶, 從二品은 素金帶 였으며 正三品은 鈔銀 從三品은 素銀帶였고 四品은 素銀帶五品에서 九品 까지는 黑角帶였다. 以上の 것을 綜合하여 볼때 冠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帶의 경우도 中國으로 부터 制度를 輸入 하였고 한번 들어온 中國制度를 우리 나름대로 發展시켜 본 일없이 中國의 王朝가 바뀔때 마다 「賜與冠服」을 그대로 입고는 하였다. 그런데 表 Ⅲ-7에서⁵⁰⁾ 한가지 說明할것은 革帶에서 단은 中國에 比해 '二等遞降原則'을 벗어나고 있으니 明에서의 三品이 朝鮮王朝의 一品에 해당됨으로 朝鮮王朝 一品은 用金이었어야 하였을 텐데 用犀로 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Ⅳ. 衣 料

衣服에, 使用된 옷감은 主로 絹 羅 綾 紗 等으로서 字典에 따르면 絹는 生絲로 얇게 짠 것이며 綾은 무늬가 있는 비단 紗는 고은비단 羅는 얇은 비단 그리고 緞은 貢緞으로 바탕이 곱고 광택이 있는 두꺼운 비단 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 비단에 對한 文獻에 소개된 記錄을 찾아 보면 經國大典에는 絹 紗 羅 綾 等이고⁵¹⁾

高麗史에서는 羅 絹等이⁵²⁾

唐書에서는 紗 羅等이⁵³⁾

45) 柳喜卿 著 「한국 복식사연구」 p. 62, 1975 梨花出版社

46) 弘文館纂輯 「增補文獻備考」 卷 七十九 參照

47) 高麗史 志 卷 二十六 輿服志 「十三年六月 始革胡服 依大明制 自一品至九品 皆服紗帽團領 其品帶有差 一品重大匡 以上 銀花金帶 二品兩府以上 素金帶 自開城府尹 及三品大司憲至常侍鈔花銀帶 判事至四品素銀帶 五六品至七品門下錄事注書密直堂後三司都事藝文春秋館典校寺 成均館八九品外方縣令監務角帶 東西班七品以下氈毛絲帶西班牙五六品高頂笠氈帽絲帶 其任諸監各邑者 紗帽品帶 指諭行首內侍草房及承令出外者 東西班 時散勿論 參以上 紗帽品帶 參外角帶」

48) 三國史記 卷第 三十三 雜誌 等二色服 新羅條 參照

49) 明史 卷 六十七 志第 四十三 輿服志三 「洪武 三年定 皇帝常服 鳥紗折角向上巾 盤領窄袖袍 東帶間用金 文武官常服 凡事視事 以鳥紗帽 團領衫 束帶爲公服 其帶一品 玉 二品花犀 三品 金鈔花 四品素金 五品銀鈔花 六品七品素銀 八品九品鳥角 凡致仕及侍 親辭閉官 紗帽束帶」

50) 表 Ⅲ-7은 다음 資料記錄에 의하였음 「明의것은 武王年制定된것으로 明史」 「興德王服飾禁制」 「高麗禑王 十三年六月에 制定된것으로 高麗史의 記錄」 「經國大典 禮典儀章條」

51) 經國大典 禮典 儀章條

52) 高麗史 志 二十六 車服志 p. 25

53) 唐書 卷 二十四 志 十四 車服志 p. 15

(表 Ⅲ-7) 中國과 우리나라의 帶

國別	時代	區分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中國	明	品階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六品	七品	八品	九品								
		帶	玉	花 犀	金 銀 花	素 金	銀 鈹 花	素 銀	鳥 角										
우 리 나 라	新 羅	官階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官階名	伊代 滄	伊 滄	連 匡	波 珍 滄	大 阿 滄	阿 滄	一 吉 滄	沙 滄	級 伐 滄	大 奈 麻	奈 麻	大 舍	舍 知	吉 土	大 鳥	小 鳥	造 位
	帶	眞 骨 級				六 頭 品 級				五 頭 品 級		四 頭 品 級							
	帶	男(禁) 研文山王 女				男(用) 鳥犀鐵銅 女(禁) 金銀絲 毛爲組 孔雀尾翠				男(用) 銀 女(用) 鐵		男(用) 鐵同 女(禁) 繡組野草 羅乘天羅用 越羅 紬							
高 麗	品階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	開城府尹 및 三品大司憲 부 터 常侍 까지					判事 부 터 四品 까지							
	帶	一重大 以上	二品 兩府 以上	素 金	鈹 花 銀	素 銀	角												
朝 鮮 王 朝	品階	一品	二品	三品	四品	五品부터 九品까지													
	服	朝私 祭公 常	朝 公 私 祭 常	朝 公 私 祭 常	朝 公 私 祭 常	朝 祭 公 常													
	帶	犀 紅條 兒	(正) 鈹金 (從) 素金 荔 枝 金 紅 條 兒	(正) 鈹銀 (從) 素銀 荔 枝 金 紅 條 兒	素 黑 角	黑 角													

宋史에서는 紗 羅 등이⁵⁴⁾

明史에서는 紗 羅 등이⁵⁵⁾ 있었다.

이는 곧 비단중에서도 綉 羅 綾 紗 등을 重히 여기고 있었음이며 또한 이들 비단이 高級官吏들의 衣料이기도 하였던 것을 알수가 있다. 衣料비단은 全部 中國의 것으로 그 希貴性 때문에 소중히 여

겨 왔다. 新羅 興德王때에는 너무나 흘러 들어오는 唐나라의 文物中 우리에게 사치성을 助長하는 衣服의 材料가 되는 中國 비단의 輸入을 禁 한바 있으며⁵⁶⁾ 朝鮮王朝 英祖때에도 中國 비단의 輸入을 禁止 하는 한편 「鄉織」을 권장 함으로서 中國에 依存하고 있던 官中이나 兩班의 衣服을 改革하

54) 宋史 卷一五二 輿服志 p.8

55) 明史 卷六十七 志四十三 p.21

56) 三國史記 卷六 新羅本記六 p.2

고져 하는 意圖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中國비단 중에서도 紋緞의 輸入은 엄금하여 위반자는 加重 처벌한다고 하였음을⁵⁷⁾ 볼때 우리의 衣料 또한 전적으로 中國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結 論

以上으로서 服飾의 中國으로 부터의 傳來와 그 制度가 어떻게 되었던가를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는 統一新羅以後 부터 事大主義에 젖어 唐制를 따르기 始作 하였고 이로부터 中國式 衣服을 입게 되었다. 高麗의 衣服 또한 唐나라 宋 나라의 影響을 받았으며 한때 胡亂 등의 理由 때문에 元 나라의 영향 속에 있다가 高麗末 恭愍王은 新興 明나라의 勢力이 中國을 席捲하게 되자 王權의 承認을 위해 同王 十八年 五月 元의 至正年號를 정지하고 明太祖의 등극을 致賀하여 謝恩表를 올리는 同時에 冠服賜與를 請 하였으니 明의 影響 속으로 轉換되었던 것이다. 勿論 朝鮮王朝에 들어 와서는 한층 더 深化 事大拜恭理念的의 支配的인 時代潮流와 合勢 國王의 冕服에서 부터 官吏들의 官服인 公服 常服 祭服 朝服에 이르기까지 中國式을 따르게 되었으니 庶民服飾의 경우 우리의 고유 옷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과는 對照的으로 우리의 冠服制度는 우리 나름대로의 發展을 시켜본 일 없이 中國의 王朝가 바뀔때 마다 賜與冠服을 그대로 입고는 하였었다. 特히 中國의 影響은 우리의 服飾意

識을 階級的意識 權威的意識으로 유도해 가는메 크게 作用하게 되었고 結果的으로는 各時代 共히 支配階級的의 服飾制度 등의 制定에단 置重하게 되었고 이 制度의 制定 또한 單純한 中國의 그것을 踏襲한것에 불과 하였었다.

參 考 文 獻

-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 文化史 1973
- 金富弼, 三國史記 서울 朝鮮史學會本 1940
- 徐 兢, 畫和奉使高麗圖經 梨花史學資料叢書 第 2 集, 1970 中華民國二十年故宮博物院影印本
-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1.
- 李能和, 朝鮮女俗考 京城, 東洋書院 1927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梨花出版社 1975
- 朴京子, 韓國衣裳構成 서울 修學社 1979
- 原田淑人, 唐代의服飾 東京 東洋文庫 1970
- 弘文館纂輯 增補 文獻備考
-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
- 高宗國역총서 15 「국역 高麗史節要」 Ⅲ 서울 1970 경인문화사
- 金美子 “中國團領에 관한 研究” 服飾 第三號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1967 中華 大典編印會

57) 弘文館纂輯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 二十六 章服一 p.40 「我東鄉織自可用 此外勿論紗緞絀凡仔有紋者 一切嚴禁」